금지하고, 인양작업 시 하부 출입 통제하여야 한다.

- (4) 안전모, 안전화, 보안경, 안전장갑 등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5) 바지선에서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반드시 고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6) 윈치(Winch) 주변에서 작업이나 작동할 때 윈치드럼에 협착, 파단 된 와이어로 프에 충돌, 와이어로프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윈치의 로프를 감을 때는 장비나 도구 사용
  - (나) 윈치 드럼의 덮개를 덮고 사용
  - (다) 윈치 와이어로프 긴장되어 있을 때 그 위나 아래, 앞 또는 나란히 서 있지 말 것(긴장된 로프의 양쪽 15도가 위험지대 범위)
  - (라) 윈치의 주요구조부와 용접부위, 전기 장치, 후크, 도르래 등의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
  - (마) 윈치는 지정된 근로자 외 취급금지 조치
- (7)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인양할 때 사용하는 줄걸이용 로프 안전조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63조 및 KOSHA GUIDE M-81-2011(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8) 크레인의 안전조치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9절 제2관과 제3관 및 KOSHA GUIDE C-48-2012(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)에 따른다.

## 5.5 바지선의 작업환경

- (1) 탱크 등 밀폐공간에 출입 할 때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조치 하는 등 산소결 핍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다음의 산소결핍 우려 장소에는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- (가) 물이나 수증기가 존재하는 강철 탱크에서 녹이 발생한 곳
- (나) 탱크 안에 도장작업을 실시한 경우